

---

##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제 정	2015. 4. 3.	일부개정	2016. 2. 22.
일부개정	2016. 4. 11.	일부개정	2016. 6. 29.
일부개정	2017. 2. 28.	일부개정	2017. 3. 20.
일부개정	2017. 9. 24.	일부개정	2018. 2. 26.
일부개정	2018. 4. 2.	일부개정	2019. 2. 8.
일부개정	2019. 2. 15.	일부개정	2019. 5. 20.
일부개정	2019. 9. 26.	일부개정	2020. 1. 14.
일부개정	2020. 9. 29.	일부개정	2021. 1. 8.

---

#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 개정사항

### < 2021. 1. 8. 제15차 개정 >

- 2021. 보수지급 기준표 개정
- 시간외수당 단가 조정

#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지방이양시설↔국비지원시설) 보수격차 완화를 위해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수립
- ◆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자활, 여성, 아동 등)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 지방이양시설 및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수 지원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 보수 현실화 추진

## I. 추진 방침

- 부처별, 사업별 개별 보수 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 보수 현실화  
⇒ 2018년까지 지방이양시설 보수 수준의 100% 달성
- 시설별로 서로 다른 각종 수당에 대한 기본급화, 연봉제로 개편
- 직급체계 일원화로 시설 간 보수수준의 형평성 유지

## II. 보수체계 개선 및 현실화 계획

### 1. 보수지원체계 일원화

- ❖ 시설유형별로 다른 급여체계와 직급체계를 단일 체계로 일원화 하고, 직급별 정원을 마련하여 시설여건에 따라 다른 보수 수준 차이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구 분	현 행	개 선
급여체계	기본급 + 7개수당(자활) 기본급 + 9개수당(여성) 기본급 + 5개수당(아동)	기본급 + 2개 수당 * 분권시설과 동일
직급체계	4개 직급(자활) 7개 직급(여성) 2개 직급(아동) 3개 유형 (유형별로 2~7개 직급)	단일 직급체계 (9개 직급)
정원책정	-	시설별·직급별 정원 책정

## 2. 보수 현실화

- ❖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대비 평균 80%의 보수 수준을 2018년까지 100%로 현실화하여 처우개선 및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 보수 현실화 목표 \*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대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하위직위) 84%	90%	93%	96%	100%
(고위직위) 77%				

## 3. 급여체계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으로 별도 수당 설치 금지

구 분	현 행		개 선 (2015년 시행)
	지방이양시설	국비지원시설	
기본급	연 봉	기본급(본봉)	연 봉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수 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직무(직책)수당, 자격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가족수당, 가계지원비 가계보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수당 토요근무수당 기타 상여금	
		추가운영비	
		명절(효도)수당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위험수당*	
계		연봉 + 3개수당	

## 4. 직급체계 개선

○ <개선 - 지방이양시설과 동일 직급체계화> <개정 2016. 6. 29.>

- 보건복지부 직급체계,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직급체계 일원화
- 직급체계 : 9개 직급 (시설장, 사무국장, 1 ~ 7급)

### < 직급체계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축탁의사

\* 관장·원장은 시설장 직급, 부장은 사무국장 직급, 과장은 1급 직급으로 간주  
단, 사회(노인)복지관의 부장은 1급, 과장은 2급으로 봄

### <보수지급 기준표 보수적용 기준>

- '보수지급 기준표(별표1)'는 매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급 권고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 직급별 보수적용 기준 (단, 2017.1.1.부터 적용)

\* 2020년 보수지급 기준표(별표1)

직급체계	보수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시설장	(일반직) 관장	2020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사무국장	(일반직) 사무국장	
1급	(일반직) 1급	
2급	(일반직) 2급	
3급	(일반직) 3급	
4급	(일반직) 4급	2020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5급	(일반직) 5급	
6급	(관리직) 3급	2020년 보건복지부 축탁의사 기본급 권고 기준
7급	(관리직) 4급	
축탁의사	(의료직) 축탁의사	

\* 보수지급 기준표 산정방식 : (보건복지부 기본급×12월) + 명절휴가비(기본급×120%)

## 5. 직급별 승진최소 소요연한

○ 지방이양시설과 동일기준 적용 ※ 현 시설 근무연수임

구 분	1급←2급	2급←3급	3급←4급	4급←5급	5급←6급	6급←7급
일반직	5년	4년	3년	3년		

- 주1) 직급별 승진은 정원 범위내에서 가능  
 주2) 사무지원, 보조원, 취사원은 적용 제외

## 6. 채용 및 최초 인건비 지원 직급

- (채용)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 채용은 개별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것
  - \* 채용 후 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보수 적용을 위한 최초 인건비 지원 직급 부여 기준과 채용기준을 혼동하지 말 것
- (최초 직급)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 채용 후 시설 규모(종사자 수) 및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에 따라 최초 인건비 지원 직급 부여
  - \* 근무경력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유사경력 제외)

### 1 시설장

- (5인 미만 시설)
  - 시설장으로 최초직급을 부여할 수 없고, 근무경력에 따라 하위 직급인 사무국장 또는 1급으로 최초직급 부여
- (5인 이상 시설)
  - 근무경력에 따라 시설장, 사무국장 또는 1급으로 최초직급 부여

< 최초 직급 부여기준 (시설장) >

직 위	종사자수	최초 직급			비 고
		시설장	사무국장	1급	
시설장	2 ~ 4인	×	15년 이상	15년 미만	
	5 ~10인	15년 이상	7년~15년	7년 미만	
	11인 이상	20년 이상	10년~20년	10년 미만	

## 2 사무국장

### ○ (11인 미만 시설)

- 사무국장으로 최초직급 부여할 수 없고, 근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자에 한해 1급으로 최초직급 부여

### ○ (11인 이상 시설)

- 근무경력에 따라 사무국장 또는 1급으로 최초직급 부여

< 최초 직급 부여기준 (사무국장) >

직 위	종사자수	최초 직급		비 고
		사무국장	1급	
사무국장	11인 미만	×	12년 이상	
	11인 이상	15년 이상	7년 이상 ~ 15년 미만	

## 3 일반종사자

- 직책(직위)은 있으나 특정 직급 명시가 없는 종사자의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최초 직급 부여하여 인건비 지원

- 단,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종사자의 경우는 일반직 등은 5급, 기능직 또는 관리직은 7급으로 최초 직급 부여

< 최초직급 부여기준 (직급 명시 없는 경우) >

시설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지역자활센터	실장	부·과장	팀장				
여성인권시설		상담원	상담원		사무지원 보조원		취사원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다함께돌봄센터				생활복지사			
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과장	선임상담원	상담원 요양보호사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센터		과장		요양보호사			

시설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상담원	팀장 상담원 임상심리	상담원	상담원 사무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임상심리		보육사			
공동생활가정				보육사			
청소년쉼터			팀장, 상담원		행정원		
다문화가족		팀장	팀원				
노숙인재활시설	사무국장	정신보건 전문요원		상담원,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관리인, 조리원

주1) 최초 채용직급은 시설별 해당직급 정원 범위 내에서 부여

<예시> 자격조건이 2급이라 하더라도 2급 정원이 없으면 3급으로 부여하되, 해당직급 결원시는  
승진 최소연한에 관계없이 승진가능

주2) 법인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직급으로 직급별 정원 범위내에서 최초직급  
부여가능하나 다음직급으로 승진 임용시에는 해당시설에서 24개월이상 근무해야 함

주3) 법인내 인사 교류시 해당직급 및 경력 인정(단, 정원 범위내)

## 7. 시설유형별, 종사자별 직급별 정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준이며, 시설 자체 부담으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 2015. 1. 1 기준으로 전 종사자에게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부여
- 2015. 1. 1 이후 다음 직급으로 승진임용은 해당 직급(승진 임용된)에서 해당 시설에 승진 최소 소요연한을 근무해야만 가능  
단, 최초 지원직급보다 하위 직위에 있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관계 없이 직급별 정원범위 내에서 승진임용 가능

주1) 5인 미만 시설장인 경우 인건비 지원은 사무국장급으로 조정 부여

주2) 여성인권시설인 경우 (상담원 3명이상) 5인 이상 시설에 대해 2급 1명 정원책정



## 8. 인건비 지원대상 종사자 직위(급) 부여기준(최초 제정시)

### □ 2015년 1월 1일 기준(최초 직급부여)

- 제주자치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임
- 2015. 1. 1기준(안)으로 전 종사자에게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부여 단,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최초지원 직급에서 직급별 승진 최소연한이 경과해야함(예시) 직급별 승진최소 연한 : 2급은 4년이상, 3급 3년 이상 현시설 근무자

- (지역자활센터, 여성인권시설) 현재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하여 호봉확정
-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미적용) 시설장은 사무국장 1호봉, 생활복지사는 4급 1호봉
  - 경력인정 및 승급에 따른 호봉변경 미인정. 단, 운영주체의 후원금 등 예산 범위에 따라 경력인정 및 승급 등은 자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운영비 사용제한 범위를 적용받음
- 현행 직급에서 다음 직급으로 승진은 정원 범위 내에서 승진임용 가능
  -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반드시 준수
  - (1직급 승진임용 원칙) 5급→4급, 4급→3급, 3급→2급
  - 단)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반드시 준수하되, 3급에서 2급으로 승진 임용자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7년 이상 되어야 함

### □ 최초직급부여 이후(2015년 1월 1일 이후) 승진임용 <개정 2016. 6. 29>

- 상위 직급으로 승진의 경우
  -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 없이 적용 (2015.7.1.1.부터 적용) <2017.12.31. 삭제>
  -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 없이 적용 (2015년 승진자 포함) <2018.1.1. 시행>
  - \* 단, 2015년에 1호봉을 감하여 승진한자는 2015년 승진시부터 소급적용하여 호봉을 재 확정하되 재확정으로 발생한 인건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8년 1.1.부터 재확정된 호봉에 의해 인건비를 지급한다. < 2018. 1. 1. 시행>
- 상위직급으로 승진은 해당 직급에서 해당시설에 승급 최소연한을 근무해야만 가능

단) 최초 지원직급보다 하위 직위에 있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직급별 정원범위 내에서 승진임용 가능

- 법인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직급으로 직급별 정원 범위내에서 채용이 가능하나 다음직급으로 승진 임용시에는 해당 시설에서 24개월이상(해당직급 승진 최소연한 충족) 근무해야 함  
단, 법인내 인사 교류시 해당직급 및 경력 인정 (단, 정원 범위내)

### Ⅲ. 보수지원 기준

#### 1. 적용 보수표

구 분	개소수	인원	적용보수표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10	441	-									
지역자활센터	4	26	지방이양 사회복지 시설 보수기준 표	지방이양 사회복지 시설 보수기준 표	지방이양 사회복지 시설 보수기준 표	지방이양 사회복지 시설 보수기준 표	지방이양 사회복지 시설 보수기준 표					
성폭력피해상담소	2	8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12										
성매매피해상담소	1	5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1	5										
성매매피해자지활지원센터	1	6										
가정폭력상담소	3	18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13										
여성긴급전화1366	1	16										
이주여성쉼터	1	5										
폭력여성이주여성쉼터	1	8										
지역아동센터	66	147										
다함께돌봄센터	1	2										
아동보호전문기관	2	26						90%	93%	96%	100%	100%
학대피해아동쉼터	3	15										
공동생활가정	4	12										
노인보호전문기관	2	1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	4										
청소년복지시설	7	44										
다문화가족	2	10										
건강가정지원센터	1	5										
노숙인재활시설	2	40										

## 2.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

### 1) 시설별 지원시간

- 이용시설 : 지원상한 월 20시간(시설장 제외) <2018.1.1.시행>
- 생활시설 : 지원상한 월 40시간(시설장 제외) <2018.1.1.시행>

\* 긴급피난처를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는 생활시설 기준 지원상한시간 적용

### 2) 시간외수당 지원단가 < 2021. 1. 8. >

- (산정기준) 전년도 시간외수당 단가 대비 보건복지부 보수기준 인상률 0.9% 적용

구 분	시설장	사 국 무 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021년	(미지원)	11,910	10,770	10,320	9,870	9,430	8,990	8,540	8,110
2020년	(미지원)	11,810	10,670	10,230	9,790	9,350	8,910	8,470	8,040

\*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법인) 부담으로 지급

\* 위 기준은 시설지원 단가로, 시설별로 지원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3. 사회복지시설 연봉제 시행(권장)

시행일 : 2015년

급여체계

- 급여체계 : 연봉 + 3개 수당(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위험수당)

급여의 지급

- 급여의 총액을 시설별 보수지급지침에 의해 지급
- 퇴직적립금 : 총 급여의 12분의 1(매월 적립)
  -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퇴직시 또는 매년 지급)

## 4. 종사자 인건비 지원방식

**인건비 지원내역(연간)** <개정 2016. 6. 29>

구 분		지원기준	지급시기	비 고	
급 여	연 봉	◦ 보수지급 기준표(별표1)에 의함	매 월		
	수 당	가족수당	◦ 1인당 20천원(배우자 40천원) * 부양가족수 : 4인이내 (자녀의 경우 4인초과 가능) * 둘째자녀 월40천원, 셋째이후 자녀는 월 80천원 가산	매 월	기타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시간외 근무수당	◦ 별도 지원기준에 의함 * 시설장 지원 제외	매 월	
		위험수당	◦ 월 10만원 * 적용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4), 노숙인시설(2)	매 월	
4대 보험		◦ 총 급여의 일정분	매 월	사업주부담분	
퇴직적립금		◦ 총 급여의 12분의 1	매 월	1년이상 근무자 지급	

**4대보험 요율표 : 연도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에 의함**

**인건비 지원 및 집행·정산**

○ **인건비 지원**

- 보수지급 기준표와 시설별로 종사자의 직급별 호봉별 인건비 총액 산정 후 국고지원 기준액 대비 차액분에 대하여 지방비 추가 지원

\* 인건비 총액 : 연봉 + 2개 수당(시간외·가족수당) + 4대 보험 + 퇴직적립금 등

※ 국고지원 기준액에서 운영비와 인건비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국고 지원 기준 인건비 대비 차액 지방비 보전

- **집행 및 정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시설별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2020.1.14. 13차 개정>

- \* 사회복지시설 담당부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시행
- \* 도 인건비 지원 기준 미준수시 지원 불가

## IV. 기 타

- 최초 제정일 : 2015. 4. 3. (적용시기 : 2015. 1. 1.)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2016. 6. 29.)
  - 2016. 2. 22. : 보수지급 기준표(별표1) 변경
  - 2016. 4. 11. : 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 및 지원단가 변경
  - 2016. 6. 29. : 지방이양시설과 동일한 보수체계 적용 변경  
(단, 직급별 「보수지급 기준표」 보수적용 기준 및 승진시 호봉 적용기준 개정사항은 2017.1.1.부터 적용)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2017. 9. 24)사항은 2018.1.1.부터 시행한다.
- 가이드 일부개정 : 2018.2.26. (보수기준표 및 시간외수당)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18. 4. 2.(가정폭력피해상담소 신규 개소 시설 정원조정, 지역아동센터 정원조정 및 폐업시설 정원 삭제)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19. 2. 8.(정원 조정)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19. 2. 15.(정원 조정)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19. 5. 20.(시간외수당 단가 변경)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19. 9. 26.(정원 조정)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20. 1. 14.(보수, 시간외수당, 정원 조정)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20. 9. 29.(시설 유형 추가, 정원 조정 등)
-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2021. 1. 8.(보수지급 기준표 등)

[별표 1]

2021. 道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지급 기준표

(단위 : 원 / 년)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호봉	34,504,800	32,514,240	30,936,840	28,225,560	26,530,680	25,215,960	24,715,680	24,377,760	24,057,000
2호봉	35,750,880	33,645,480	31,998,120	29,156,160	27,370,200	25,615,920	25,416,600	24,959,880	24,394,920
3호봉	37,110,480	34,925,880	33,229,680	30,107,880	28,314,000	26,287,800	26,046,240	25,552,560	24,969,120
4호봉	38,526,840	36,186,480	34,494,240	31,396,200	29,264,400	27,075,840	26,730,000	26,128,080	25,527,480
5호봉	40,228,320	37,621,320	35,855,160	32,761,080	30,231,960	27,900,840	27,492,960	26,677,200	26,080,560
6호봉	41,929,800	39,185,520	37,383,720	34,173,480	31,462,200	28,728,480	28,394,520	27,384,720	26,772,240
7호봉	43,631,280	40,828,920	38,914,920	35,649,240	32,720,160	29,917,800	29,612,880	28,632,120	27,321,360
8호봉	45,348,600	42,544,920	40,560,960	37,139,520	33,987,360	31,161,240	30,819,360	29,700,000	28,152,960
9호봉	47,079,120	44,260,920	42,262,440	38,669,400	35,317,920	32,406,000	31,860,840	30,358,680	29,156,160
10호봉	48,723,840	45,934,680	43,946,760	40,142,520	36,556,080	33,594,000	32,874,600	31,459,560	30,403,560
11호봉	50,367,240	47,464,560	45,520,200	41,503,440	37,798,200	34,694,880	33,933,240	32,574,960	31,174,440
12호봉	51,982,920	48,851,880	46,891,680	42,732,360	38,841,000	35,593,800	34,904,760	33,588,720	32,058,840
13호봉	53,370,240	50,083,440	48,095,520	43,806,840	39,842,880	36,467,640	35,749,560	34,549,680	32,990,760
14호봉	54,504,120	51,241,080	49,294,080	44,850,960	40,801,200	37,326,960	36,422,760	35,349,600	33,733,920
15호봉	55,647,240	52,341,960	50,496,600	45,850,200	41,718,600	38,140,080	37,151,400	35,963,400	34,334,520
16호봉	56,729,640	53,397,960	51,569,760	46,794,000	42,601,680	38,984,880	37,795,560	36,664,320	35,006,400
17호봉	57,742,080	54,290,280	52,499,040	47,695,560	43,431,960	39,824,400	38,410,680	37,349,400	35,679,600
18호봉	58,701,720	55,206,360	53,432,280	48,568,080	44,233,200	40,625,640	39,139,320	38,037,120	36,694,680
19호봉	59,598,000	56,080,200	54,262,560	49,340,280	44,975,040	41,345,040	39,857,400	38,616,600	37,394,280
20호봉	60,400,560	56,909,160	55,065,120	50,112,480	45,701,040	42,045,960	40,580,760	39,176,280	37,984,320
21호봉	61,187,280	57,654,960	55,853,160	50,825,280	46,374,240	42,676,920	41,222,280	39,845,520	38,648,280
22호봉	61,944,960	58,357,200	56,577,840	51,515,640	47,013,120	43,313,160	41,807,040	40,603,200	39,411,240
23호봉	62,649,840	59,058,120	57,269,520	52,170,360	47,625,600	43,893,960	42,476,280	41,389,920	40,164,960
24호봉	63,316,440	59,730,000	57,913,680	52,748,520	48,213,000	44,468,160	43,043,880	42,118,560	40,908,120
25호봉	63,964,560	60,345,120	58,557,840	53,322,720	48,776,640	45,012,000	43,641,840	42,791,760	41,656,560
26호봉	64,496,520	60,945,720	59,117,520	53,882,400	49,328,400	45,512,280	44,173,800	43,377,840	42,346,920
27호봉	65,039,040	61,463,160	59,648,160	54,354,960	49,778,520	45,941,280	44,602,800	43,957,320	42,925,080
28호봉	65,511,600	61,865,760	60,119,400	54,770,760	50,187,720	46,301,640	44,901,120	44,355,960	43,356,720
29호봉	65,873,280	62,240,640	60,519,360	55,158,840	50,566,560	46,647,480	45,144,000	44,802,120	43,805,520
30호봉	66,178,200	62,630,040	60,939,120	55,520,520	50,901,840	46,972,200	45,388,200	45,078,000	44,204,160
31호봉		62,788,440	61,201,800	55,878,240	51,291,240	47,348,400	45,662,760	45,541,320	44,511,720

- \* 보수기준 : (보건복지부 보수기준표(장애인/일반직)\*12월) + 명절휴가비 120%
- \*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미포함
- \* 촉탁의 기본급 : 2,899,100원 / 연봉 : 기본급 \* 12개월 + 명절휴가비 120%

[별표 2]

# 시설별 정원표

(2020.9. 29.기준)

연번	시설유형	시설명	직급별 정원										총합 의사
			계	시설 장	사무 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합계 (110개 시설)			441	105	2	15	30	132	134	14	4	3	2
1	지역자활센터 (4)	제주이어도 지역자활센터	6	1		1		1	3				
2		수놓음 지역자활센터	8	1		1	1	2	3				
3		일터나눔 지역자활센터	7	1		1	1	1	3				
4		서귀포 오름 지역자활센터	5	1		1			3				
5	성폭력피해상담소 (2)	제주YWCA 통합상담소	4	1				3					
6		제주여성상담소	4	1				3					
7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	제주YWCA여성쉼터	5	1			1	2		1			
8		그린터	7	1			1	3		2			
9	성매매피해 상담소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남	5	1			1	2		1			
10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여성의 쉼터 불턱	5	1				2		1		1	
11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자활지원센터	6	1			1	3		1			
12	가정폭력상담소 (3)	가정행복상담소	6	1			1	4					
13		제주가족사랑상담소	5	1			1	3					
14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7	1			1	5					
15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	생명의 샘	6	1			1	4					
16		뜨락(구, 가족사랑쉼터)	7	1			1	5					
17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16	1			1	14					
18	이주여성쉼터	שלמחן 물가	5	1			1	3					
19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제주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8	1			1	6					
20	지역아동센터 (67)	1318 해피존 더불어숲 지역아동센터	2	1					1				
21		1318 해피존 찬란한미래 지역아동센터	3	1					2				
22		고산지역아동센터	2	1					1				
23		구엄지역아동센터	2	1					1				
24		김녕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2	1					1				
25		꿈꾸는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2	1					1				
26		꿈나무 지역아동센터	2	1					1				
27		꿈쟁이 지역아동센터	2	1					1				
28		늘푸른 지역아동센터	2	1					1				
29		대화 지역아동센터	2	1					1				

연번	시설유형	시설명	직급별 정원											
			계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추탁의사	
30		더불어숲 지역아동센터	2	1					1					
31		봉개 지역아동센터	2	1					1					
32		봉아름 지역아동센터	2	1					1					
33		빛과 소금 지역아동센터	2	1					1					
34		새순 지역아동센터	3	1					2					
35		수정 지역아동센터	2	1					1					
36		신촌 지역아동센터	2	1					1					
37		외도 지역아동센터	2	1					1					
38		용담 지역아동센터	3	1					2					
39		우도 지역아동센터	2	1					1					
40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2	1					1					
41		우리하도 지역아동센터	2	1					1					
42		원 지역아동센터	2	1					1					
43		이호 지역아동센터	2	1					1					
44		제일 지역아동센터	3	1					2					
45		조천 지역아동센터	2	1					1					
46		종달 지역아동센터	2	1					1					
47		참좋은 지역아동센터	3	1					2					
48		청수 지역아동센터	2	1					1					
49		하소로 지역아동센터	3	1					2					
50		한라 지역아동센터	2	1					1					
51		한사랑 지역아동센터	2	1					1					
52		함덕 지역아동센터	2	1					1					
53		해바라기 지역아동센터	3	1					2					
54		행복나눔 지역아동센터	2	1					1					
55		홍익 지역아동센터	2	1					1					
56		화북 지역아동센터	2	1					1					
57		가마 지역아동센터	2	1					1					
58		감산 지역아동센터	2	1					1					
59		대정골 지역아동센터	2	1					1					
60		대정 지역아동센터	2	1					1					
61		동신패이디온 지역아동센터	2	1					1					
62		동흥 지역아동센터	2	1					1					



연번	시설유형	시설명	직급별 정원											
			계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추탁의사	
63		모슬포 지역아동센터	2	1					1					
64		무지개 지역아동센터	2	1					1					
65		보목 지역아동센터	2	1					1					
66		비전 지역아동센터	3	1					2					
67		삼육 지역아동센터	3	1					2					
68		샘물 지역아동센터	3	1					2					
69		샘솟는 지역아동센터	3	1					2					
70		성산포 지역아동센터	2	1					1					
71		성읍 지역아동센터	2	1					1					
72		소망 지역아동센터	2	1					1					
73		신례 지역아동센터	2	1					1					
74		신평 지역아동센터	2	1					1					
75		신흥 지역아동센터	2	1					1					
76		아름다운 지역아동센터	3	1					2					
77		안덕 지역아동센터	2	1					1					
78		온누리 지역아동센터	2	1					1					
79		위미 지역아동센터	2	1					1					
80		중문 제일 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	2	1					1					
81		중문 지역아동센터	3	1					2					
82		서귀포시공립혼디지역아동센터	3	1					2					
83		LH행복꿈터삼화 지역아동센터	3	1					2					
84		꿈지킴이 지역아동센터	2	1					1					
85		담쟁이지역아동센터	2	1					1					
86	다함께돌봄센터(1)	다함께돌봄센터	2			1			1					
87	아동보호전문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14	1		4	4	3	2					
88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12	1		3	4	3	1					
89	학대피해아동쉼터 (3)	빙새기 그룹홈	5	1			1		3					
90		아이오름 그룹홈	5	1			1		3					
91		보듬이 그룹홈	5	1			1		3					
92	공동생활가정 (4)	제주몽생이 그룹홈	3	1					2					
93		제주소나이 그룹홈	3	1					2					
94		예향원그룹홈	3	1					2					
95		예향숲그룹홈	3	1					2					
96	노인보호전문기관 (2)	제주노인보호전문기관	7	1		1	1	1	3					

연번	시설유형	시설명	직급별 정원											
			계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사	
97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7	1				1	5					
98	노인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제주노인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4				1		3					
99	청소년복지시설 (7)	제주도청소년일시쉼터(고정형)	10	1				9						
100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6	1				5						
101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6	1				5						
102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6	1				5						
103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6	1				5						
104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8	1				7						
105		이시돌숨비소리청소년회복 지원시설	2	1				1						
10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1	1	4						
107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1	3						
108	건강가정지원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5				1	4						
109	노숙인재활시설 (2)	제주시 희망원	21	1	1	1		5	4	5	2	1	1	
110		서귀포시 사랑원	19	1	1			5	5	3	2	1	1	